
‘18년도 한국의료 나눔문화 확산 사업

2018. 7.

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|---|
| I. 사업개요 | 1 |
| II. 사업내용 | 3 |
| III. 지원내용 | 5 |
| IV. 지원접수 | 6 |
| 붙임1. 여비 관리 지침 | 7 |

1 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Medical Korea 국가의료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한국의료 우수성 홍보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기여
 - 해당국 언론사 동반 초청을 통한 나눔의료 환자 치료 사례 홍보물 제작 및 현지 송출(게재)로 글로벌 마케팅 강화

□ 주요 내용

- 나눔의료 사업 수행을 통한 Medical Korea 해외 홍보
 - 주요국가 대상*, 현지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발굴하여 치료하고 해당국 언론사 초청을 통해 홍보물 제작 및 현지 송출(게재)
 - * 러시아 및 CIS국가,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, 중동 등
 - 나눔의료 사업 참가 기관 및 환자 치료사례 홍보
 - * 나눔의료 홍보 제작물(영상, 기사등)을 통합 의료관광 웹사이트(www.visitmedicalkorea.com), SNS, 기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

< 2017년 나눔의료 해외현지 방영분 >

| | |
|---|--|
|  |  |
| <p>△ 아이티 운동장애 환자</p> | <p>△ 몽골 화상 환자</p> |
|  |  |
| <p>△ 카자흐스탄 심실중격결손 환자</p> | <p>△ 말레이시아 화염화상 환자</p> |

○ 나눔의료 기념행사 개최를 통한 한국의료 나눔문화 확산

- Medical Korea 컨퍼런스 행사 중 환자 및 참가기관, 해외 언론사, 홍보대사 등 관계자를 초청 기념행사 개최

< 나눔의료 기념행사 개최 >



△ 2013 나눔의료 기념만찬
- 배우 송중기, 하지원 초청



△ 2014 나눔의료 기념만찬
- 배우 하지원 초청



홍보대사 : 설수진

△ 2015 나눔의료 기념만찬
- 베스티안 화상재단 설수진 대표 초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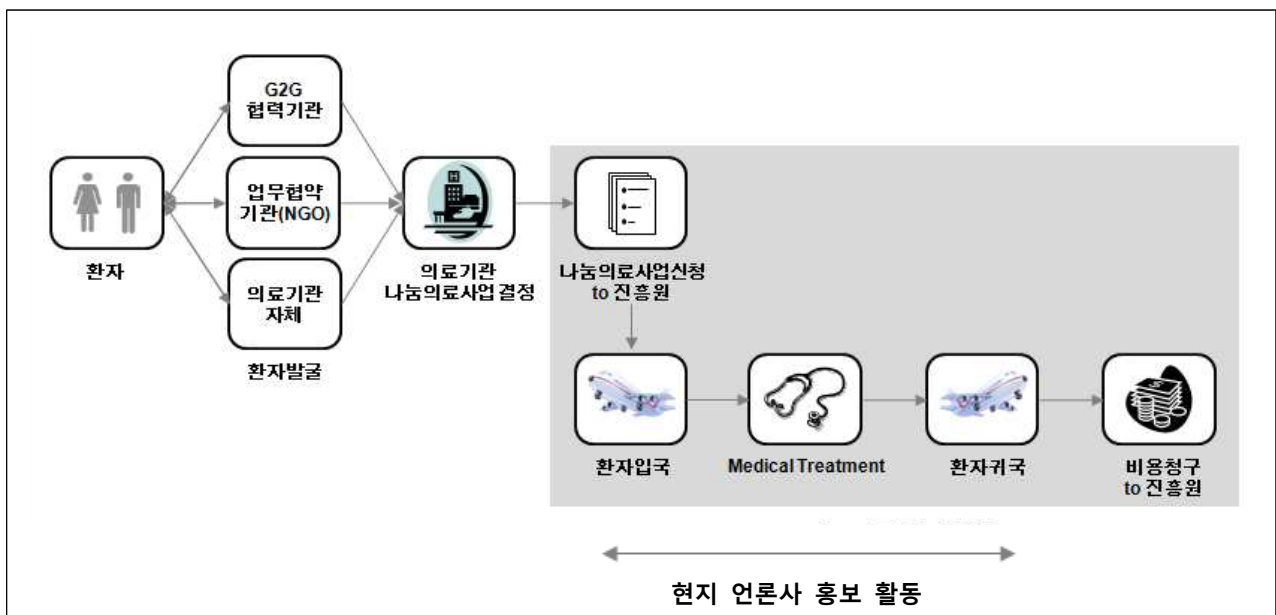
△ 2016 나눔의료 기념행사
- 페루 나눔의료 환아 초청



△ 2017 나눔의료 기념행사
- (左)말레이시아 나눔의료 환아 초청, (右) 기념식 홍보영상

2 사업 내용

□ 추진 체계



○ (사업공모) 의료기관·유치업체·유관기관(지자체 등) 대상 공고

- * 유치업체 및 유관기관은 치료 의료기관 선정 후 신청
 - * G2G 사업·해외홍보대사연계·환자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한 상황의 경우 신청기간 외 수시접수 가능
- [붙임 1] '통합 의료관광 홈페이지 나눔의료 사연 접수' 참고

○ (사업기획) 신청기관에서 해외환자유치 주요국가 대상, 현지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선정하여 나눔의료 사업 신청

-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환자(사연, 진료과정 등) 선정
- 환자와 동반초청되는 현지 홍보사(방송사, 신문사, 매거진 등) 또는 관계 의료인(의사·치과의사) 선정
- 치료 및 홍보계획을 포함한 참가 신청서(첨부 1) 제출

- (기관선정) 신청 환자의 적합성, 의료기관의 전문성, 현지 홍보사 또는 의료인 초청을 통한 홍보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심의
 - (신청기관) 기관의 전문성 및 환자 치료의 책임감, 해외환자 유치 실적, 해외환자 무료시술 및 기타 포상 실적 등
 - (환자) 국적(해외환자유치 주요국가) 및 지원의 시급성(중증도, 가정환경) 등
 - (동반초청자) 홍보사 또는 관계 의료인의 홍보효과
 - (홍보사) 현지 홍보매체의 영향력(채널 전파력), 홍보콘텐츠의 파급력(환자의 사연 및 치료과정의 스토리텔링)
 - (관계 의료인) 환자 귀국 후 현지 Post-care를 지원할 의료인으로 현지 홍보물 동반 출현 및 추후 환자송출 채널 역할 여부
- * 국내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·수료한 연수생 포함
- (치료 및 홍보) 환자의 사연과 연계한 신청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과정 및 한국의 우수 의료기술 등을 소개하는 홍보물 제작·현지 송출(게재)

□ 실시 일정

- 연 중 2회 실시(상·하반기)
 - * 사업비 소진 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

| 내용 \ 일정 | 상반기 | 하반기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사업 공고 | 3월 | 7월 |
| 참가 접수 | 3월 ~ 4월 | 7월 ~ 8월 |
| 환자 초청 및 치료 | 4월 ~ 6월 | 8월 ~ 10월 |
| 정산 | 7월 중 | 11월 중 |

3 지원 내용

□ 지원 사항

- (여비) 환자(보호자 포함) 및 해외 홍보사 또는 의사·치과의사의 왕복항공료, 국내 체재비 지원(실비)
 - * 환자의 치료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전액부담
 - (항공료) 이코노미석 왕복 항공료 지원
 - (체재비) 국내 체류 기간 동안의 식사, 관광, 교통비, 통역비 지원
 - * [붙임 2] ‘여비 사용 지침’ 참고
- (홍보) 나눔의료 사업 참가 기관 및 환자 치료사례 홍보
 - 해외 홍보사 제작물 등 통합의료관광 웹사이트(visitmedicalkorea.com) 게재
 - 현지국가의 나눔의료 홍보채널 연계·지원
- (기타) 원활한 나눔의료 사업 수행을 위한 통역 및 비자 수속 지원
 - (통역) 필요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한 통역인력 지원 요청
 - (비자) 원활한 사증발급을 위한 행정 지원(관계기관 협조 공문 발송 등)
 - * 입국 전 사증발급 비용 지원 불가, 사증 연장비용은 체재비 내에서 사용 가능

4 지원 접수

□ 제출 기간 : '18.7.9(월) ~ 7.31(화)

□ 제출 서류

- (필수) 1) 2018 Medical Korea 나눔의료 참가신청서 1부
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3)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
- (선택) 1) 최근 3개년 해외 환자 무료 진료 실적 증빙
2) 최근 3개년 해외환자 또는 봉사 관련 포상 수상 실적 증빙

□ 제출 방법 : 이메일접수

- 제출처 : 외국인환자유치단 유치사업팀 하지봉 연구원
(☒ medicalcharity@khidi.or.kr, ☎ 043-713-8078)

□ 추진 일정(하반기)

| 내 용 | 일자(예정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참가신청서 접수 마감 | 7.31(화) |
| 참가 의료기관·환자 선정 및 결과 통보 |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 |
| 환자 초청 및 시술 / 홍보물 제작 및 방영(계재) | 결과통보 이후 ~7월 |
| 나눔의료 정산 | 11월 중 |

□ 유의 사항

-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제출된 자료는 본 용도 이외에 사용하지 않으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의하여 보호됨
- 초청 환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, 민감정보(질병명, 주요 치료과목, 예상치료기간 등)는 의료기관에서 별도 관리
- 필요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시 선정에서 제외되며, 선정 후 허위사항 적발 시 선정 취소

붙임 1 여비 관리 지침

□ 여비 지원 사항

- (항공료) 왕복 항공권(환자, 현지 언론사, 의사·치과의사 공통)
- (체재비) 국내 체류 기간 동안의 식사, 관광, 교통, 통역비 등

< 여비 지원 내역 >

| 구분 | 비목 | 세목 | 내역 | 사용범위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환자 및 보호자 | 항공료 | 항공 및 현지교통비 | 항공권 | 이코노미석 실비 사용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해외 현지 교통비 | ‘지택→공항’의 현지 교통비 사용 가능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체재비 | 숙박·식사 | 국내 숙박 및 식비 | < 지원 금액 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동반(환자, 보호자)</th> <th>개인(환자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~2주</td> <td>90,000원/1일</td> <td>50,000원/1일</td> </tr> <tr> <td>3~4주</td> <td>40,000원/1일</td> <td>30,000원/1일</td> </tr> <tr> <td>5~12주</td> <td>10,000원/1일</td> <td>10,000원/1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* 산정된 체재비 내에서 1일 사용 한도 없음 | 구분 | 동반(환자, 보호자) | 개인(환자) | 1~2주 | 90,000원/1일 | 50,000원/1일 | 3~4주 | 40,000원/1일 | 30,000원/1일 | 5~12주 | 10,000원/1일 | 10,000원/1일 |
| | | 구분 | 동반(환자, 보호자) | | 개인(환자) | | | | | | | | | | | |
| 1~2주 | 90,000원/1일 | 50,000원/1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~4주 | 40,000원/1일 | 30,000원/1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5~12주 | 10,000원/1일 | 10,000원/1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관광 | 국내 관광비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교통 | ·공항 송영 ·기타 국내 교통비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생필품 및 기타 | ·생활용품 구입비 ·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 이외의 진료비(감기 등) ·통역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해외 홍보사 또는 의사 치과의사 공통 (2인) | 항공료 | 항공료 | 항공권 | 이코노미석 실비 사용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체재비 | 숙박·식사 | 국내 숙박 및 식비 | < 지원 금액 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최대지원액(1인)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숙박비</td> <td>100,000원/1박</td> <td rowspan="2">최대 4박5일</td> </tr> <tr> <td>식비</td> <td>50,000원/1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* 2인까지 지원 가능 | 구분 | 최대지원액(1인) | 비고 | 숙박비 | 100,000원/1박 | 최대 4박5일 | 식비 | 50,000원/1일 | | | | |
| | | 구분 | 최대지원액(1인) 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숙박비 | 100,000원/1박 | 최대 4박5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식비 | 50,000원/1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교통 | ·공항 송영 ·기타 홍보물 제작을 위한 국내 교통비 등 | 실비 지원 (코리아투어패스카드 사용 등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* 필요시 원활한 환자 치료와 안전을 위해 동행한 사업 참여기관 직원(최대2인)의 식비, 관광, 교통비 지원

□ 여비 지원 비목별 계상 기준

| | |
|---|--|
| <p>1. 집행원칙(방법) : 모든 여비는 사업 참가 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*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로 증빙 철저</p> <p>2. 정산원칙(방법) : 모든 여비 지원은 실비정산으로 사업 완료 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, 회계법인의 사업비 정산 위탁 수행을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·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, 사업 결과보고서, 해외 방영(게재) 홍보물, 정산 서류 제출 * 정산계좌는 신청기관명과 예금주가 일치하는 계좌로 일원화</p> <p>3. 기타 해당되지 않은 비목은 사업수행기관 자기비용으로 사용</p> <p>4. 본 지침에 따른 사업비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, 본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규정은 상위 법률 및 규정(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지침, 공무원여비규정 등)에 의하여야 함 * 다만, 적용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사전 문의 후 집행</p> | |
| 여비정산 불인정 사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류가 포함된 식사비(주류 및 안주류 일체 불가) ○ 불편성이 벗어난 생활용품 구입 ○ 일괄구매로 인하여 구입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○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고, 대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 ○ 결과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○ 해외 현지 홍보물 송출(게재)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|

○ 항공료

| 비목 | 항공료 |
|---|-------------|
| 세목 | 항공 및 현지 교통비 |
|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| |
| <p>【사용용도】</p> <p>1. (환자 및 보호자) 치료를 위한 한국 입·출국 왕복 항공료 * 거주지와 공항과의 거리,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해외 현지 교통비 지급 가능</p> <p>2. (해외언론사) 한국의료 홍보물 제작을 위한 한국 입·출국 왕복항공료</p> <p>3. (의사·치과의사) 환자 귀국 후 현지 케어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한국 입·출국 왕복 항공료</p> <p>【계상기준】</p> <p>1. (환자 및 보호자) 현지 교통비 및 항공권 이코노미석 실비</p> <p>2. (해외언론사, 의사·치과의사) 항공권 이코노미석 실비</p> <p>【정산증빙】</p> <p>1. (공통) 여권사본, E-ticket, 항공료 인보이스, 입금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, 통장사본</p> | |

○ 체재비

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비목 | 체재비 | | | |
| 세목 | 숙박, 식사, 관광, 교통, 생필품 및 기타 | | | |
|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| | | | |
| 【사용용도】 | | | | |
| 1. (환자 및 보호자) 치료기간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한 체재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숙박·식사 - 국내 숙박 및 식비(주류 및 안주류 일체 불가) · 관광 - 국내 체류기간 중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일체의 활동(고궁, 테마파크 입장료 등) · 교통 - 공항 송영, 기타 교통수단 이용 비용 · 생필품 및 기타 - 필수 생활용품 구입(기저귀, 의류, 신발 등),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 이외의 질환 진료비 및 처방약(감기 등), 통역비 | | | | |
| 2. (해외연론사, 의사·치과의사) 홍보물 제작 및 환자 치료를 위한 국내 체재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숙박·식사 - 국내 숙박 및 식비 · 교통 - 공항 송영, 환자 치료, 기타 홍보물 제작을 위한 국내 교통비 등 | | | | |
| 【계상기준】 | | | | |
| 1. (환자 및 보호자) 체재 기간에 따른 지원 기준 금액 내 사용(실비정산, 최대 12주) | | | | |
| 체재 기간 | 환자 및 보호자(2인) | 환자(1인) | | |
| 1~2주 | 90,000원/1일 | 50,000원/1일 | | |
| 3~4주 | 40,000원/1일 | 30,000원/1일 | | |
| 5~12주 | 10,000원/1일 | 10,000원/1일 | | |
| * 2018년 최저 생계비 기준(1,708,253원/월)에 상응하는 체재비 산정 (4주 이상 체제 환자는 의료기관 입원으로 판단하여 최소 금액 산정) | | | | |
| 예시> 동반입국 후 5주 체류 시 | 1~2주 기준 (90,000원x14일) | 3~4주 기준 (40,000원x14일) | 5~12주 기준 (10,000원x7일) | 총 지원금액 1,890,000원 |
| * 체류기간 동안 산정된 체재비 내에서 1일 한도없이 사용가능 | | | | |
| 2. (해외연론사, 의사·치과의사) 최대 4박5일, 2인까지 지원 기준 금액 내 사용(실비정산) | | | | |
| 구분 | 최대지원액(1인) | 비고 | | |
| 숙박비 | 100,000원/1박 | 최대 4박5일 | | |
| 식비 | 50,000원/1일 | | | |
| 교통비 | 실비정산 | 코리아투어패스카드 사용 등 | | |
| 예) 2인, 4박5일 체류시 : 숙박비(100,000원x2인x4박) + 식비(50,000원x2인x5일) = 1,300,000원 | | | | |
| 【정산증빙】 | | | | |
| 1. (공통) 구매내역서 작성(별첨1, 결제수단 명시), 영수증 사본(모든 항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이나 개인카드 사용 시 부서장 서명 필요 * 모든 항목에 대해 반드시 영수증 첨부, 영수증 분실 시 정산 불가 | | | | |